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안이유

가. 인천시에서는 부평구 부평2동에 소재한 인천가족공원 내에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임

나. 우리시에서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주민들에게도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왔으며, 주변주민들은 그동안 이로 인한 지역이미지 실추, 재산상의 손실 등의 불편을 감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임.

다. 이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함 (안 제3조)
- 나.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20 이내의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함(안 제4조)
- 다.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bkim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및 인접지역 중 화장시설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공동사업
2. 주민소득향상사업

3. 주민복지증진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주민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협의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시장은 주민지원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가족공원사업단장
4.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마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정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연번	지자체	조례명	조원재성방법	지원대상
1	제주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반회계 - 사용료 12/100 - 도 예산	장사시설이 위치한 읍면동

○ 기초자치단체

연번	지자체	조례명	조원재성방법	지원대상
1	경기도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용인시출연금	지원대상 면·리 직접 규정
2	경기도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5/100	지원대상 동 직접 규정
3	충 남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5/100 - 시 출연금	장사시설이 위치한 리 및 그 인접 리
4	충 남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2/100	자치단체장 결정
5	전 북 군산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2/100	규정하지 않음
6	전 북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2/100	규정하지 않음
7	전 북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10/100	자치단체장 결정
8	경 북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기금조성 - 사용료 8/100	장사시설반경2km
9	울 산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특별회계 설치 - 보조금 및 전입금	자치단체장 결정
10	강원도 평창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반회계 - 사용료 12/100	장사시설이위치한 리 및 그 인접 리

[붙임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평균 세입액(2011~2013년)
의 20% 주민지원발전기금 조성
 - 평균 세입액 약 6,000백만원이며, 매년 1,200백만원정도
의 기금조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회 수당 발생
 - 100천원 × 13명 = 1,3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상정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정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징수액의 20% 기금조성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시설7급 김희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입	△ △ △ △ △ △ △ △						
	소계						
세출	△ △ △ △ △ △ △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군 · 구비							
민 간							
기 타							

※ 2011년~2013년 화장세입징수 평균 금액의 20% 적용함